

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41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12월 1일
제출자 : 김영해 의원 외 5인

1. 제안이유

가. 우리군의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군의 재정 및 인적 경쟁력의 약화요인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화가 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므로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하려고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지원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.(안 제3조 내지 제4조)
- 나. 출생신고 시 신고절차 안내와 신고요령 등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- 다. 보험료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등을 규정함.(안 제6조)
- 라. 임산부 및 출생아의 등록·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.
(안 제7조 내지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집행부 의견 : 별첨
- 다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

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평창군의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출생아”라 함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.
2. “보험기관”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보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의 범위) ①건강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둘째 아이부터로 한다. 다만, 출생아 중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.

②출생아의 부모, 부 또는 모의 사망,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.

③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기준 등) 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이하에서 5년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18년간 보장 받는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한다.
2. 건강보험은 평창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, 수의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,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가 되며,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.

제5조(지원절차) 출생아의 보험료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·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보험료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에 의한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.
2.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·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3. 읍·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,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, 관내 거주사실여부,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4.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 지원 조치하며,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.

제6조(보험료지원중단 및 환수조치) ①보험료 지원대상자가 18년 이내에 다른 시·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,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전출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. 다만,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.

③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④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보험료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산부·출생아 등록 관리) ①군수는 「모자보건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가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보건의료원에 신고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신고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출생아에 대하여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, 모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대장의 비치)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생아 보험료 지원대장(별지 제2호 서식)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

접수번호	제 호			
보 호 자	부 (성명)		주민등록번호	
	모 (성명)		주민등록번호	
출 생 아 인적사항	성 명		출 生 일	년 월 일
	출산자수	중 째	분만의료기관	
주 소				
전화번호	자 택		휴 대 폰	
특기사항				

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
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 소 :

출생아 와 관계 :

신 청 인 : (서명 또는 날인)

평 창 군 수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장

번호	출생아 이름	주민등록번호	주 소	연락처	등록일	사유 및 일자	비 고
	보호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				

관계법령 발췌

〈지방자치법〉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〈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〉

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〈모자보건법〉

제8조 (임산부의 신고등) ①임산부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(이하 "보건기관"이라 한다)에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보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후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보건기관의 장은 당해 보건기관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한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보건기관의 장은 당해 보건기관에서 미숙아 혹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(이하 "미숙아등"이라 한다)를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 주소지의 관할보건소장에게 그 출생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.